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フ	관	의	장
람				
담				



제300호 2013. 5. 2(목)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제300호(2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039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5월 2일

사천시장 정만규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전액감면
 - 가.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 - 나.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·치안·안보에 관한 행사
- 2. 사용료 50퍼센트 감면
 - 가.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, 행사, 강연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
 - 가.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른 장애인
 - 나.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2.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감면
 - 가. 「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받는 사람(다만,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)
 - 나. 10명 이상 단체입장
 - 다.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문화소외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의 경우에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수 있다(다만, 사 청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)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사용자의 의무)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,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예술 회관 관리자와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00호(4)

[별표 1]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(제5조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7 H	-1 A	사 용 료		
구 분	단위	공 연	행 사	비고
	오전	100,000	110,000	○ 1일 사용료는 오전·오후·야간의 합산금 액으로 함
대 공 연 장	오후	120,000	132,000	○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
	야간	150,000	165,000	○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한다.
	오전	15,000	15,000	 ○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2:00 이후 사용 시는 주간 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징수함(1회 사용 3시간 기준)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
소 공 연 장	오후	20,000	20,000	- 30분 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- 30분 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 의 50퍼센트
	야간	25,000	25,000	- 60분 이상 초과 : 다음 회 사용료 전액 (단, 야간시간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전시실	1일/m²당	12	20	

사 천 시 궁 보

제300호(5)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					(E), (E)
	구	분	단 위	사용료	비고
피		대 형	1회공연	20,000	
아 노	소 형		1회공연	10,000	1.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
	댄 스 재료비 ⁄	플 로 어 사용자 부담)	1회	40,000	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. 2.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
7	합 창	전 용 대	1일	30,000	의 공연을 말한다.
Ţ	덧	마 루	1회	30,000	 3.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
		조명 기본	1회공연	50,000	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.
	대	Follow spot light	1회/대	10,000	4.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	· 공 연	Par light 64	1회/대	2,000	5. 조명 1) 기본-Ceiling Source Four 750W
무	장	Par light 46	1회/조	10,000	light 18대, 무대 퍼넬 64대 등 조명시
대 조		기본조명초과	1회/대	2,000	설 사용가능하며, 사용 후 원상복구를
명		소공연장	1회공연	30,000	원칙으로 한다.
	Dry Ice machine (재료비 사용자 부담)		1회/대	20,000	2) 조명디자이너, lighting operator는 공연 장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.
	D	MX strobo	1회/대	10,000	6. 음향(마이크 추가 시)
	Fe	og machine	1회/대	20,000	1) 유선마이크 대당 5,000원
	Haze	Fog machine	1회/대	20,000	2) 무선마이크 대당 10,000원
	l		오 전	10,000	- 3) 콘덴서마이크 대당 10,000원
	무 대	연습실 오후		15,000	
	1		야 간	20,000	7.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
		본(유선마이크/모 터스피커 2대)	1회공연	10,000	1) 30분 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) 30분 이상 60분 미만 : 당해 사용료의
무대		음향반사판	반사판 1회공연 3		50퍼센트
음향	7	! 니터스피커	1회/대	10,000	
	각종플레이어		각종플레이어 1회/대		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	빔 프 로 젝 터		l 프 로 젝 터 l회/대		8. 무대, 조명, 음향 설치·철거는 사용자측
냉	대공 연장	냉 방 난 방 보조난방	1회공연	연료 실사 용 금액	이 하여야 하며,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· 난 방	소공 연장	냉 방 난 방	1회공연	25,000	
	전시실	냉 방 난 방	1일전시	30,000	

제300호(6)

사천시 조례 제1040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5월 2일

사천시장 정 만 규

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00호(7)

[별표]

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(제3조의2 관련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4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"공무원여비규정"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 - 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 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 금을 기준으로 한다.
 - 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 - 4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 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「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」을 준용한다.
 - 5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제300호(8)

규 칙

사천시 규칙 제531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3년 5월 2일

사천시장 정만규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5호 중 "관람료 감면"을 "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관람료 감액"으로 하고, "할인권 1㎡"를 "할인권 2㎡"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00호(9)

[별지 제3호서식]

	성	명				ই	l 원 번	호		
가입구	분			000원) 000원)	생년월	일			성별	□남 □여
حا ا	EIJ.	주	소							
자 택		전화	번호							
기기사		주	소							
직장/학	7117	전화	번호							
직 장	명 /	' 학 교	고 명							
휴 1	대	전	화				우편들	글수령	형체 자	택 🗆 직장 🗆
전 :	자	우	편		(D)				
관 (중 복	심 · 체	분 크 가	야 능)	미술□ 오페라□						├□ 대중음악□)
		성 대	경	구분	주소	(자택,격	식장,학교)/ 연	락처	생년월일
				□일반 □학생	주 소: 연락처:					
추 가 가 입				□일반 □학생	주 소: 연락처:					
/ 日				□일반 □학생	주 소: 연락처:					
				□일반 □학생	주 소: 연락처:					
				족 회원가	·입을 신청]7조어	∥ 따라 위	와 같이 사천
				۷				선명	또는 날인	<u>]</u>)
								. , -		

제300호(10)

훈 령

사천시 훈령 제268호

사천시 품질·환경 경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3년 4월 22일

사천시장 정 만규

사천시 품질·환경 경영규정 폐지규정

사천시 품질·환경 경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00호(11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3 - 40호

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21일

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변경 승인번호 : 제2013-3호
- 2. 점용·사용 변경 승인 년월일 : 2013년 3월 21일
- 3. 점용ㆍ사용의 장소 : 경남 사천시 실안동 1096-18번지선 공유수면
- 4. 점용·사용 승인 면적 : 336.5m²
 - 도크: 170㎡, 부잔교: 66.5㎡
- 5. 점용 · 사용 목적
 - 어선부착 해조류 제거 작업을 위한 도크와 어선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 설치
- 6. 점용 · 사용 변경 승인사항
 - 점용・사용 기간
 - 당초 : 2010년 04월 26일~2013년 04월 25일
 - 변경 : 2013년 04월 26일~2028년 04월 25일
- 7. 점용 · 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· 주소
 - ○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○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8. 점용 · 사용 변경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제300호(12)

승 인 조 건

- 1. 동 시설물은 선박에 붙은 해초류 등 제거 작업 및 선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선박 도크 및 부잔교 시설의 기간연장 건입니다.
- 2. 동 시설물 이용 시,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, 폐자재 및 시설물 주변 해역의 쓰레기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3. 선박의 계류 및 수리 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또한,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4.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또한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- 5. 위 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,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- 6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 화관광과)에 알려야 합니다.
- 7. 동 장소는 용도·지역지구 미지정된 공유수면 및 도시계획시설 『중로3-7호선』이 계획된 곳으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하여야합니다.
- 8.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조치 합니다.
- 9.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,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제300호(13)

사천시 고시 제2013 - 62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25일

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3 4호
- 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3년 4월 25일
- 3. 점용 · 사용의 목적
 -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
- 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20-11번지선 공유수면
- 5. 점용·사용의 면적: 700㎡(직접: 123㎡, 간접 577㎡)
 - PE부잔교(L=30m, B=4.10m), 도교(L=14m, B=1.2m)
- 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3년 4월 25일~2028년 4월 24일
- 7. 점용 ·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· 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8. 점용ㆍ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제300호(14)

승 인 조 건

- 1. 본 사업은 2013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공유수면에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.
- 2. 동 시설물 운용 시,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(폐기물)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3. 선박의 이·접안 및 유류 급유 시,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- 4. 또한,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5.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- 6.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『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』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 화관광과)에 알려야 합니다.
- 7.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- 8.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조치합니다.
- 9.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수령 후, 20일 이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